

발간등록번호
11-B553457-000002-10



공저 상사 작 물 담 집

공공저작물 상담 사례집

개정판
ver.5

문화체육관광부
KCISA 한국문화정보원



공저 상사 작 물 담 집





공저 상사 작 레 공 물 담 집



공공저작물 상담 사례집

2021 12월 14일 인쇄
2021 12월 14일 발행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에서 펴냄
(주)태그엔에서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편집자 주

본 사례집에 수록된 공공저작물 상담 사례의 법리 적용 및 결론 등은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소개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6조*에 따라 2016년 3월 개소하였으며,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 맞춤형 개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지원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진단 및 개선 지원
 3.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촉진을 위한 자문
 4.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5. 그밖에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서비스 신청 상시 접수 / 저작권법 상담 무료 지원

관리체계 진단

·저작권 관리 현황 진단
·관리기준 권고



관리확인 지원

·검토의뢰 게시물
·개방 거부 검토



법률 컨설팅

·저작권 법률 자문
·계약서 검토



맞춤형 교육

·전 직원 대상 방문교육
·책임관 및 담당자 대상
수준별 소집교육

공 저 상 사 공 작 물 담 례 집

발 / 간 / 사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과 신기술이 접목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의 원천자료로서 공공저작물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전한 저작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공공저작물의 개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은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개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저작물을 생산하는 기관으로부터 공공저작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저작권의 귀속 및 권리처리 등 다양한 사례의 상담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기관들의 공통적인 문의사항과 올 한해 개방지원센터를 통하여 상담한 대표적인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저작물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담사례집이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데 있어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을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홍희경

CONTENTS

I. 공공저작물 일반

1. 저작물성 인정 관련	10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2
3. 공공저작물의 범위	15
4. 저작물의 공표 관련	21

II. 공공저작물 취득 및 관리

1. 저작권 귀속	26
2. 저작권 등 권리처리	31

III. 공공저작물의 개방

1. 공공저작물 개방	52
2.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69
3. 공공누리의 적용	72
4. 제공비용	77
5. 공공저작물의 연계	80
6. 공공저작권의 신탁	93

IV. 저작물 이용

1. 저작물 이용 가부	98
2. 저작물 이용 범위	102

V. 기타

1. 개인정보 관련	116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118
3. 저작권 공유자의 폐업	122
4. 공공데이터 관련	124
5. 초상권 관련	127
6. 공모전 관련	131

VI. 부록

1. 계약서 및 동의서 양식	138
①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139
② 자유이용 허락 동의서	143
③ 초상 이용 동의서	144
2. 웹툰으로 알아보는 공공누리 제도	145
1화.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제도	146
2화. 공공누리 4가지 유형	158
3화. 출처표시	168
4화. 신탁저작물	178
5화. FAQ : 상업적 이용과 변경 금지 사례	188

공공저작물 일반

1. 저작물성 인정 관련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3. 공공저작물의 범위
4. 저작물의 공표 관련

01

I. 공공저작물 일반

1. 저작물성 인정 관련

기관에서 업무에 의하여 다양한 위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도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나요?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면 저작물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 수치 등 사상 또는 감정이 배제된 데이터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저작물성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저작물성의 인정 문제는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01

02

I. 공공저작물 일반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기관의 공고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나요?

- **저작권법 제7조¹⁾**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는 비보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다만 공공기관의 공고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저작권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대부분 공고가 단순 사실이나 제도 등을 적시한다는 측면에서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고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게시판의 자료 등도 비보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1)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0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문서에도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행정처분 문서는 특별히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창작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7조)
- 또한 대부분의 처분문서에는 처분대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 공공저작물 일반

3. 공공저작물의 범위



04

기관에서 사진촬영을 목적으로 채용된 직원이 업무상 촬영한
시청각물이 저작물인가요?

저작물이라면 소유권자와 저작권자는 누가 되나요?

만일 이 시청각물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각종 전시회 등
행사에 활용할 경우 이 시청각물을 촬영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 법원은 사진저작물이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44542)
다만 저작물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기관에서는 실무상 저작물성이 있음을 전제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상 촬영한 사진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상 저작물로 기관이 저작자가 됩니다. 즉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여 모두 충족한다면 저작자는 기관이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 제9조²⁾)

1. 기관이 저작물 작성을 기획
2. 기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작성(촬영)
3. 업무상 작성(촬영)

참조 법령

[저작권법]

2)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 판례

사진저작물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1. 구 저작권법(2006.12.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2. 기관 명의로 공표
3.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어 기관이 저작자가 되는 경우 기관은 별도의 동의 없이 사진 이용이 가능합니다.

05

기관에서 외부 용역자와 계약할 때 별도로 저작권 귀속을 정하지 않고 저작권 양도 계약도 체결한 바 없으면 공공저작물로 볼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별도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 따라서 기관과 외부 제3자(용역자)가 함께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저작권은 기관과 외부 제3자가 공유하게 되나, 외부 제3자(용역자)가 단독으로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외부 제3자 단독 저작물이 됩니다.
- 이와 같이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거나 외부 제3자와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외부 제3자의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외부 제3자(용역자)에게 사후적으로 저작권 양도를 받거나 개방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공공저작물로서 개방이 가능합니다.

06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것이면, 저작재산권의 소유정도(일부/전부)와 관계없이 공공저작물인가요?

-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
- 다만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43호) 제3조 제2호는 공공저작물의 정의에 관하여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저작물의 정의에 관하여는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공공누리 부착 및 이용허락에 동의한 경우를 예정한 것인바,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공공누리 부착 및 이용허락에 동의한 경우라면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07

저작권법 제24조의2 1항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소유해야지만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 ❑ 원칙적으로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 하거나 공공누리 부착 및 이용허락에 동의한 경우라면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기관에서는 향후 저작권 양도 또는 공공누리 부착을 포함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로 개방하실 수 있고, 이용자는 공공누리 이용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사례집 말미에 첨부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및 자유이용허락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공공저작물 일반

4. 저작물의 공표 관련

04

08

저작물의 '공표' 시점이 궁금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거나 간행할 경우 공표시점은 언제인가요?

-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따라서 홈페이지에 해당 게시물을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라면 게시일이 공표 시점이 되고, 발행물의 경우 발행일을 공표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09

미공표저작물을 양도받았습니다.
이 경우 양수자 해당 저작물의 공표할 수 있나요?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2항³⁾). 따라서 양수자인 기관에서 해당 저작물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참
조
법
령

[저작권법]

3) 제11조(공표권)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II

공공저작물 취득 및 관리

1. 저작권 귀속
2. 저작권 등 권리처리

10

II. 공공저작물 취득 및 관리

1. 저작권 귀속

타 기관에서 00작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행정자료와 기관의 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를 만들 경우 새로운 자료의 저작권은 기관에 전부 귀속되나요?

(각 행정기관에서 원자료를 제공받을 때 별도의 저작권 양도는 없었습니다)

- ▣ 타 기관에서 작성한 행정자료와 기관의 조사 자료를 결합한 저작물이 결합저작물인지, 2차적 저작물인지 등에 따라 새로운 자료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달라집니다.

첫째, ‘결합저작물(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인 경우라면 타 기관에서 작성한 부분과 기관에서 작성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각각 타 기관과 작성 기관에 있으므로, 타 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양도했거나 개방에 대한 이용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개방 및 공공누리 부착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기관 소속 직원이 저술한 부분과 타 기관이 저술한 부분을 분리하여, 기관의 자료만 개방이 가능합니다(즉, 기관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단독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둘째, ‘공동저작물(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은 각각 창작에 기여한 바에 따라 공유로 귀속됩니다(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하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타 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양도했거나 개방에 대한 이용 동의를 한 경우 개방 및 공공누리 부착이 가능하고, 출처표시에 관하여 미리 합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만약 기관에서 작성한 부분이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기관에 저작권이 귀속하고, 개방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원저작자(타 기관)의 허락은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이 아닌 적법요건이므로, 적법요건을 갖추기 위해 타 기관의 허락을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11

기관에서 받은 행정자료끼리 결합하여 기관에서
제3의 새로운 자료를 생산한 경우

(타 기관 행정자료 + 타 기관 행정자료 결합한 경우)

제3의 새로운 자료(DB포함)에 대한 저작권 모두가 기관으로
귀속되나요? 만약 기관으로 저작권이 귀속될 경우
개방하고자 할 때 행정자료를 제공했던 기관에는
어떠한 사후조치도 필요로 하지 않나요?

(각 행정기관에서 원자료를 제공받을 때 별도의 저작권 양도는 없었습니다)

- 타 기관에서 받은 행정자료라도 결합하여 별개의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자료를 생산한 경우라면, 새로운 자료는 '2차적 저작물⁴⁾'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새로이 창작성이 부가된 부분에 한하므로, 기관은 새로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원저작자의 허락 없는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되나(원저작자(타 기관)의 허락은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이 아닌 적법요건임), 원저작자와의 관계에서 독자적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주장하여 침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 기관(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참조 판례

4)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이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자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참조)

12

00연보, 00월보 등은 저희 기관 및 타기관의 00자료를
종합한 간행물로, 외부에 사업을 위탁하여 자료수집 및
간행물 편집 등을 맡기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하는 업무는
자료수집 및 편집이 주된 과업으로 창작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됨에도
계약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외부 업체에게도
저작권 50%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외부 업체에서 '창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작성'에 기여하였는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기관에서 입증이 곤란한 측면이 많고, 실제 분쟁 사례에서도 창작성에 기여도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많기 때문에 계약서 등에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정확하게 명시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참고로 '편집저작물⁵⁾'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편집저작물도 그 소재들의 편집행위에 창작성이 있는 부분은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⁶⁾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5) 제2조 제11호

편집물이란 저작물(예시: 신문, 잡지, 백과사전, 시집, 논문집 등)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예시: 영어단어집, 문헌목록, 직업별 전화번호부 등)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6) 제6조 제1항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13

출판사와 계약한 작가가 간행물에 삽화, 스토리텔링을 작성한 경우 삽화 등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기관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 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삽화, 스토리텔링의 창작자(작가)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기관에 저작권이 귀속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 필요하고,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가 어려운 경우라면 공공누리 부착을 포함한 자유이용허락 동의를 받은 후 개방 및 공공누리 부착이 가능합니다(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및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샘플은 상담 사례집 말미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삽화나 표지 디자인 등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업 지시나 계약 당시 삽화, 이미지, 표지 디자인 등 권리에 관하여 미리 정확하게 기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II. 공공저작물 취득 및 관리

2. 저작권 등 권리처리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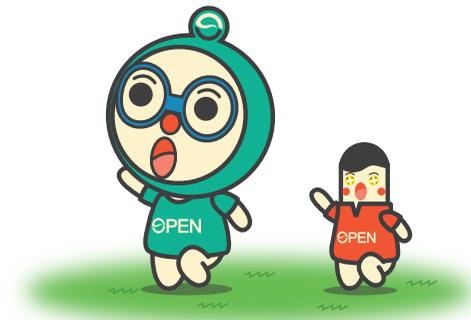
저작권 계약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싶어요. 변경되는 내용을 기술한 이메일 내용으로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을까요?

-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며, 원칙적으로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는 수정된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을 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 다만 향후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메일 내용 따로 캡처하여 관리하실 것을 권고 드리고, 본 계약과의 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우선 순위 및 수정된 내용의 발효일을 명시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15

세미나의 자료를 ISBN을 부착하는 경우 공공저작물이 되어 제1유형으로 개방해야 하나요? 그리고 발간물에 대한 디자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ISBN의 부착과 공공누리 부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ISBN을 부착하시더라도 곧바로 공공저작물이 되어 공공누리 제1유형의 개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발간물에 대한 디자인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디자인(이미지, 서체 등 포함)에 대한 이용범위를 반드시 명확하게 명시하시고, 향후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 및 보증 규정, 면책 규정 등을 삽입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참고로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16

저작권 일체를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의 법적 근거규정이 있나요?

- 저작권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위탁자 일방이나 수탁자 일방, 또는 공유 등으로 저작권재산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계약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다만 계약의 내용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당하게 협의하실 것을 권고 드리며, 저작권 중 저작권재산권만이 양도와 상속의 대상이 되고, 저작인격권은 양도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7

직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특정 브랜드 사진 또는
포털 검색을 통해 가져온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특정 브랜드의 경우 상표 및 디자인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허락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으로 복제나 이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참고로 '**키프리스**'사이트(**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는 등록된 상표 및 디자인권의 검색이 가능하므로, 검색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용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그리고 포털사이트의 경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고 단순히 검색 서비스 제공자이므로, 포털 검색을 통해 가져온 이미지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 특히, 직원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저작권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기관도 **양벌 규정**⁷⁾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포털에 게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7)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유명 사진작가와 사진 촬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저작권은 사진작가에게 귀속시키기로 계약하였는데, 이 사진 저작물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안과 같이 계약서에 저작권은 사진작가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사진작가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기관은 사진작가에게 이용 허락 또는 저작권 양도를 받아야 하고, 만약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또한, 기관은 국가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10 제3항).

19

Case 1의 경우, 공동소유로 하였으나, 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다고 하였는데, 가능한 것인지와, 추후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Case 1. 공동소유와 대국민 공개를 명시]

용역결과의 지식재산권은 [] 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하되, [] 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 위 조항은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공동소유로 하되, 공개 및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에 관한 합의사항으로서, 이 조항에 의거하여 대국민 공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공개'와 '개방'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개방 및 공공누리 부착은 공개의 범위를 넘어 단순한 전송 서비스 외에 제3자에게 더 적극적인 이용허락을 하는 것이므로 서비스 주체가 이용허락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동소유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개방 및 공공누리 부착에 동의하는 경우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대상저작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이 경우 계약 상대방도 자유이용이 가능해집니다).

20-1

Case 2의 경우, 소유권은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만 하였고, 기타 조항에서 지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공동소유와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Case 2.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

본 용역사업의 결과로 산출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일체의 지적 재산권과 특허권은 공동소유가 원칙이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은 모든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이의 사용설명서를 []에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 []의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 별도의 협의(지식재산권 또는 지분 등)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은 공동소유입니다.

20-2

이와 같은 경우, 계약체결 시 별도의 소유권 양도계약(서면)을 진행하여 소유권의 전부를 득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과 특허권, 소유권 등에 관하여 합의를 통해 귀속관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1

저희 기관의 연구보고서는 업무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타 공공데이터에 비하여 작성자의 지적활동이 집약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공표하여 개인의 명예도 높으면서 기관에서는 저작자에게 이용허락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고도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을 요하고,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 따라서 개인의 명의로 공표한 경우 업무상 저작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는바, 개인에게 저작권을 주되, 개인으로부터 기관이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담은 경우라면 질의주신 내용과 같은 합의가 우선하게 됩니다.
- 다만 저작권 자체는 기관에 귀속(이 경우 별도로 이용허락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하도록 하되, 공표를 개인의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도 가능하니, 상호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22

저희 기관의 대부분 간행물이 표지만 인쇄소에서 제작하고 내용은 직원이 전부 작성하고 있습니다. 표지의 디자인적 요소 때문에 자유이용허락동의를 받아야만 1유형으로 개방이 가능하나요?

- 표지의 제호 등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나, 삽화나 이미지 등은 별도의 저작물(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표지의 디자인적 요소가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띠고 있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실무적으로 이미지나 삽화가 라이선스 비용을 별도로 받는 등 이용료 부과·징수가 되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 공공누리 제1 유형 부착을 위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양도나 자유이용허락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23

또한 동일한 간행물이 연 단위로 발간되면서
표지 디자인은 동일하고 색상만 바꾸는 경우도 매년
자유이용허락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표지 디자인의 디자인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색상을 변경할 경우 창작성이나 시각적인 요소 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이용 및 개방 등을 위해서는 자유이용허락을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다만 매년 자유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실무상 어려우므로, 당초 계약서나 동의서 작성 시, 이용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이용 범위에 관하여 연 단위 발간 시 기관에서 독자적인 색상 변경 등 변형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향후 이용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이용 동의를 계속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4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각 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계약서 등에 어떻게 기술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 저작권법 제48조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및 처분과 관련하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³⁾」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첫째**,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행사의 범위, 합의 방법(예시 : 사전 서면 동의에 의한다 또는 목적 범위 내 자유롭게 행사하되 사후 통지도 가능하다 등), 행사 절차 등 행사에 관한 협의사항을 계약서에 적시하시면 됩니다.

25

용역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발표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역 수행자가 용역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보유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용역계약조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저작재산권 일체를 위원회가 양도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 **둘째**,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예시 : A와 B는 본 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매월 말 1:1의 비율로 정산한다. 등). 만약 이러한 이익 귀속 특약이 없는 경우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서 각자에게 배분되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셋째**,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를 선정하시는 경우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참고로 내부 관계에서의 별도의 법적 책임(예시 : 계약 위반)은 별개입니다).

- ❖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에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로 한정하여 명시하는 경우, 최종보고서만이 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합니다.
- ❖ 다만 질의주신 내용이 용역과제이고, 최종보고서이며, 용역수행자가 용역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하는 자료이므로 요약본에 별도의 창작성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해석상 용역수행자가 요약본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8)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즉,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6

**용역계약 등에서 저작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을 경우 해당 저작물이 “3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이 없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관련 사례 : 저작물 내용 중에 수록된 사진, 그림, 삽화 이미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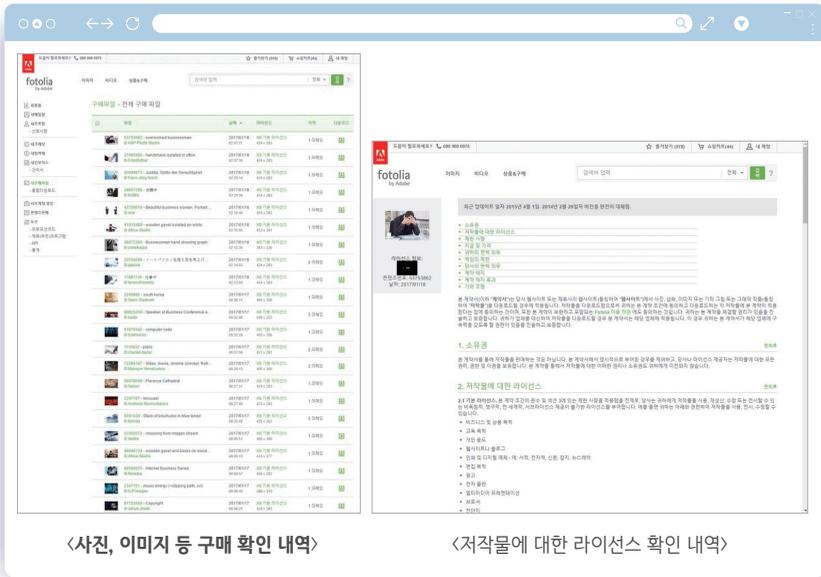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객체를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 및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등으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예시조항을 명시하시어 저작권의 대상을 명확히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예시 : 본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노트, 요약본,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 먼저 계약서에 ‘확인 및 보증규정’ 등이 있는 경우, 이는 용역수행자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권리 침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권리 침해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자가 계약 위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제3자를 상대로 기관이 직접 대응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용역수행자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및 구상권을 주장하여야 하는 2종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면책 규정’도 함께 삽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확인 및 보증규정’과 함께 ‘면책 규정’을 계약서에 삽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이와 별도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이 없다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서체 등 제3자의 지적재산권 사용 내역 및 라이선스 구매내역, 이용범위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7

저작권의 일부만 소유하였을 경우,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점 및 자유이용을 위한 방법 (후속 조치 및 향후 계약체결 시 고려사항 등)은 무엇이 있나요?

- 저작권의 일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저작권 행사에 있어 나머지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나 합의가 없는 경우 행사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기관이 보유·확보하는 것이 향후 행사에 있어서 유리하고, 만약 저작재산권의 전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활용 및 개방 등 이용 범위를 명시하시고 미리 행사에 관한 동의를 받아두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III

공공저작물의 제공

1. 공공저작물 개방
2.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3. 공공누리의 적용
4. 공공저작물의 연계
5. 공공저작권의 신탁

28

II. 공공저작물의 제공

1. 공공저작물 개방

공공누리 유형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저작권법 제24조의2** 취지에 따라 기관 등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기관 외에 제3자의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 범위에 따라 제1유형 내지 제4유형을 선택하여 부착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저작권자가 공공누리 부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누리를 부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9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과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개방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공개’와 ‘개방’의 의미는 상이한 바, ‘공개’가 이용허락이 아닌 단순히 정보나 사실 등을 여러 사람에게 터놓는 것을 의미한다면,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개방’하는 것은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광범위한 이용 허락을 의미합니다.
- 기관이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 이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제공 신청을 한 뒤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홈페이지 등에서 개방하는 경우 이용자는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방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와 달리 공공기관 등이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제공 신청 시에도 기관이 저작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30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 공공데이터제공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공공누리 미적용을 근거로 제공 거부가 가능한가요?

- 공공누리는 이용자가 이용 조건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표시 제도입니다. 공공누리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은 저작권법 및 공공데이터법 취지에 따라 저작권을 확보한 저작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누리 미적용을 이유로 제공 거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하여 기관은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는 경우 등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제공 거부할 수 있습니다.**⁹⁾

참조 법령

[저작권법]

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31

기관에서 공공누리 제2, 제4유형을 적용하여 개방한 공공저작물이 있는데, 이에 대해 책 출판 등을 목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위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기관에서 상업적 이용의 거부 근거를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조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저작권법 제24조의2** 도입 취지상 공공기관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여 자유 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인 경우,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하여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라면 공공누리 제2, 4유형을 부착하셨다 하더라도 적절한 근거가 없는 한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삽화, 이미지, 참고문헌의 이용 등 타인의 저작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거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었지만 공공누리 제2, 4유형 부착에 관한 이용동의를 받은 경우 공공누리 제2, 4유형을 적용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누리 제2, 4유형 부착을 근거로 상업적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는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 참고로, 상업적 이용 신청의 경우 대부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3조 제4항**을 근거로 제공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처럼 공공데이터법을 통해 상업적 이용 신청이 들어온 경우라면,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근거로 하여 제공 거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32

기관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국내외 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여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이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 중 원문을 공개한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심층링크 직접링크는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2008다77405)¹⁰⁾ 따라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직접 링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화면에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구현되는 프레임 링크 등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링크 형태가 아닌 원문 제공은 원칙적으로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공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여지가 있고 실무상 분쟁 가능성은 적지만,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홈페이지에서 공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복제권과 전송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작자(공표 기관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 판례

10) 인터넷 링크 중 이른바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구 저작권법(2006.12.28.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호의2는 '전송'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위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저희 지자체에서 브랜드슬로건을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했습니다.
만일 특정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사에 시의
브랜드슬로건을 변형하지 않고,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종교단체가 지자체 산하의 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데,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우선 국가, 지자체,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행사에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 참조). 따라서 질의 주신 종교단체의 경우, 공공누리 제4유형이 부착된 시의 브랜드슬로건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용조건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저작권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민, 형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도 가능합니다.¹¹⁾

참조
법령

[저작권법]

1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34

저희 기관 업무관련 매뉴얼 및 사례집은 00정책관련 업무수행 결과로
생산된 내부문서 성격이 강한데, 자유이용 대상이 되는 공공저작물
(공공데이터)로 분류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면 00정책업무관련 매뉴얼 및 사례집도 공공저작물에 해당하고, 기관 소속 직원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경우라면 업무상 저작물로서,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공공데이터)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단순 내부적 행정 자료에 불과한 경우라면 자유이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외부 배포를 금지하는 등 보안·관리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5

데이터 관련하여 발간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공을 해야 할까요?

- ❏ **공공데이터¹²⁾**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¹³⁾**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1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13)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36

집필진을 통해서 책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양도받았습니다. 이후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에 제공하려 하는데, 집필자의 권리가 침해 될까요?

- 우선 제작한 책의 저작권에 관한 권리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관이 집필진으로부터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는 민간에 제공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나, 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집필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민간에 제공하는 경우 집필자의 저작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기관에서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필진의 이용 허락이나 저작권 양도를 받은 후 민간에 제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향후 기관 차원에서 용역 발주 시, 용역 계약서나 과업지시서 등에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37

민간 포털에서 우리 기관의 논문을 연계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형태로 게재해도 되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관 소속 연구원이 아닌 공동연구자들에게 저작권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 민간 포털에서 논문을 연계하여 다운로드할 경우 복제 및 배포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으로 인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논문이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나(단,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기관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민간 포털에 제공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저자의 성명은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거나 기관에서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관은 논문의 제공 및 개방 여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속 연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자들의 동의를 전부 받으셔야 합니다.

38

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산출한 간행물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출판하고자 할 때, 기관은 어떤 절차를 거쳐
허락을 해주어야 되나요?

- 공공기관이 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산출한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은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됩니다(공공기관과 대학교의 저작권 공유).
- 따라서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대학교에서 이를 출판하고자 이용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기관은 대학교에 '저작물 이용 허락(출판 포함)'을 하시거나 '저작재산권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 양자의 차이점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대학교 단독으로 되므로 향후 별도의 이용 허락 등을 받지 않고 대학교가 단독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이용 허락'을 하시는 경우 저작권은 그대로 공공기관과 대학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대학교는 이용 허락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9

SNS 게시물에 대하여 영리목적으로 정보제공 요청이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업체와는 SNS에서만 이용하기로
합의한 상태예요. 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 해당 게시물을 업체가 작성한 것이라면 계약서 등에 저작권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업체에 귀속됩니다.
- 이 경우 기관에는 저작권이 없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저작물에 대하여 개방 및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또한 게시물을 작성한 업체와 SNS에서만 이용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 위반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참고로 계약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 전부를 기관이 보유한 경우라면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40

행정통계 생산을 위하여 타 기관에서 제공받아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행정자료(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개방 요구 시, 제공기관으로부터 저작권 양도 등 절차 없이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출받아 보유관리만 하는 단계이므로, 행정자료를 제공해준 기관에 저작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제공 거부해도 되나요?

- 네. 제공 거부가 가능합니다.
타 기관에서 행정통계 생산을 위하여 보유·관리 중인 행정자료의 경우 저작권이 타 기관에 있고, 기관에서는 이용 권한만 있을 뿐, 이를 타인에게 제공해줄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공공데이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 제2호¹⁴⁾**에 의거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라면 제공 거부가 가능합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1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II. 공공저작물의 제공

2.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41

저희 기관의 일부 간행물은 계약에 의해 외부에 의뢰하여 작성하고 있고, 일부 기획 간행물은 출판사에서 기획, 작가 섭외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과 계약 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을 인정하는 계약은 자유이용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를 피하면서 자유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0조¹⁵⁾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자유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독점적·배타적 발행권 설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 따라서 향후 독점적·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안 되며, 현재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배타적발행권자와 저작권자 등 권리자에게 공공누리 부착을 포함한 개방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자유이용을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된 계약의 경우, 공공누리 제1유형, 제3유형 부착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는 공공누리 제2유형 또는 제4유형 부착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15)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0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2

이미 출판 및 판매되고 있는 저작물의 권리를 확인해보니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용 중인 출판사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나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용자에게 대하여 이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¹⁶⁾.
- 따라서 사안과 같이 권리 확인 결과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 시 제3자의 권리 침해가 예상되거나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16)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3

II. 공공저작물의 제공

3. 공공누리의 적용

계약에 의해 인포그래픽 저작재산권 7종 전부를 기관이 보유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라면, 업무추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관 수익에 영향, 제공시 문제가 되는 사유 이외에는 반드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지정하여야 하나요?

-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기관에서 계약에 의해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포그래픽 저작재산권을 포함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이 경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착이 타당합니다(**정부도 공공누리 제1유형 부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공공누리 제2, 3, 4유형은 이용자에게 상업적 이용 금지나 변형 금지 등의 이용 조건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착에 있어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기관 내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 드립니다), 만약 저작재산권 전부를 기관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공공누리 제2~4유형을 부착하신 경우 지침 위반의 문제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03

44

기관에서 작성한 공공저작물 중 공공누리 1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공공누리 제2~4유형으로 분류한 공공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공공누리 제2유형 내지 제4유형 부착을 위해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5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공공저작물 중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저작물만 공공누리를 부착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 외 저작물은 공공누리를 부착하는 것인가요?

- 공공기관이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¹⁷⁾ 제11조 제3항 참조).
- 그리고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공공저작권 신탁¹⁸⁾이 가능하고 이용료 부과·징수도 가능하나, 기관의 내부 결정에 따라 저작권 등록 후에도 개방 및 공공누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17)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8)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4조(공공저작권의 신탁)

-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46

공공누리 유형을 잘못 지정했다고 판단 시, 홈페이지 등 웹에 게시된 자료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간행물 등 오프라인 자료는 수정이 불가함에도 모두 소급해서 수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생산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공공누리 유형을 제대로 변경하면 되는 것인가요?

- 이미 인쇄가 완료된 간행물 등의 오프라인 저작물의 경우, 공공누리를 소급하여 수정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려우므로, 앞으로 생산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해 수정하여 공공누리를 부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기존 이용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누리 부착 유형이 언제부터 수정 및 변경되었는지 함께 안내하는 방안을 권고 드립니다.(예시 : 간행물에 함께 공공누리 부착 변경 시점 등을 인쇄하는 방법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법 등).

II. 공공저작물의 제공

4. 제공 비용



47

기관 건물 앞에 설치한 건축저작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판매하려고 한데, 괜찮을까요?

- 건축저작물의 경우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¹⁹⁾**이 됩니다.
 다만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2조²⁰⁾**에 따르면 공공저작물(건축저작물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이 공공기관 등에 있는 경우라면 무료로 촬영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셔도 되나, 저작권이 외부 제3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사진으로 찍고자 하는 경우와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로 건축저작물 외에 건축물을 찍은 사진 등이 사전저작물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작권자와 협의 후 이용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참조법령

[저작권법]

19)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악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II. 공공저작물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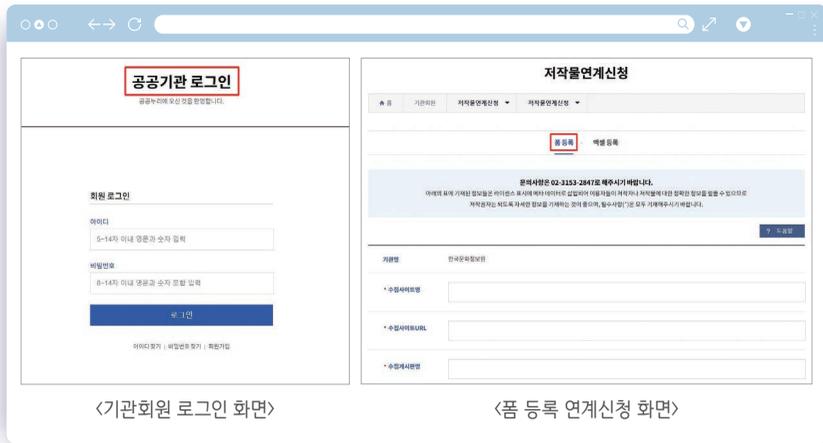
5. 공공저작물의 연계

공공누리 연계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기관회원 가입으로 로그인 하신 후 저작물연계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품 등록과 엑셀 등록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엑셀 등록은 다시 자동등록 신청과 수동등록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 또한, 저작물 연계 신청을 위해서는 기관회원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입승인 및 로그인 후, 저작물 연계신청 메뉴에서 품 등록 혹은 엑셀 등록을 통해 연계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후 연계 공공저작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품 등록 : 소수의 게시판을 개별적으로 등록할 경우 (ex. 신청 게시판이 10개 미만 권고)
 - ▶ 엑셀 자동등록 : 다수의 게시판을 일괄적으로 등록할 경우 (ex. 신청 게시판 10개 이상 권고)
 - ▶ 엑셀 수동등록 : 게시물 형태가 아닌 홈페이지 콘텐츠 형태로 된 공공저작물의 경우 엑셀에 게시판별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게시물을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 엑셀 등록으로 저작물연계신청을 시 샘플 엑셀 파일 참조

☞ 품 등록 연계신청 방법



<기관회원 로그인 화면>

<품 등록 연계신청 화면>

☞ 엑셀 등록 연계방법



<기관회원 로그인 화면>

<엑셀 등록 연계신청 화면>

☞ 공공저작물 연계 확인

연계가 완료되면 공공누리 포털사이트에서 공공누리가 적용된 해당 기관의 공공 저작물이 검색됩니다.
기관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저작물관리> 저작물 등록현황 메뉴에서 연계 신청한 게시물의 저작물 등록 여부 및 연계 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저작물관리 위치 탭 위치화면>

49

기관에서 저작물에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한 후에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공공누리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 각 게시물마다 적용하시는 방법으로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신 후, 한국문화정보원으로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공공누리 포털사이트와 연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공공누리 스크립트 다운로드 주소 : <http://www.kogl.or.kr/edu/eduDataView.do?dataIdx=118&cPage=2>

50

공공누리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공공누리 연계방식은 현재 자동연계와 엑셀 연계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게시판 형태인 공공저작물의 경우 자동 수집기 웹크롤러를 통해 저작물이 자동 연계 등록되며, 게시물 추가 시 원칙적으로 수집주기에 따라 일주일 한 번 자동으로 수집하여 연계되나, 게시물의 양에 따라 수집주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형태가 아닌 홈페이지 콘텐츠 형태로 된 공공저작물의 경우는 각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연계신청 메뉴에서 등록하거나 엑셀로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작성 후 등록하면 공공누리 유형마크 부착 및 관리자의 승인 조치 후 수동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 품 등록 : 게시판 하나 하나 간단히 등록할 경우 사용
 • 엑셀 등록 (자동) : 게시판 여러 건을 한꺼번에 등록할 경우 사용
 • 엑셀 등록 (수동) : 자동수집이 안 되는 경우, 게시물 들을 한꺼번에 엑셀로 등록할 경우 사용

51

공공누리 연계를 위해 게시판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서 상세 게시물을 모두 연계신청 해야 하나요?

- 게시판 형태의 공공저작물은 자동 수집기 웹크롤러를 이용해 수집하기 때문에 개별 상세 저작물의 URL을 일일이 연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시판 목록 첫 번째 페이지의 URL을 연계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수집과 연계가 진행됩니다.

52

자동연계 중인 게시판에 대해 과거 저작물에 공공누리 마크를 추가 적용하였는데요. 자동으로 연계 되는 건가요?

- 자동연계방식은 추가되는 최신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연계를 진행합니다. 자동연계 진행 이후 과거 저작물에 공공누리 마크를 적용하신 경우에는 개방지원 센터로 연락 주셔서 연계 방안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53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는 데 첨부문서별로 공공누리 건수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게시판 형태의 온라인 공공저작물은 상세 게시물 별 첨부문서가 여러 건 있다 하더라도 1건으로 인정됩니다.
- 공공누리 유형 마크가 적용된 게시판 한건당 한건으로 인정됩니다.



54

공공누리 연계 시,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첫째 연계 신청 시,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없는 경우 연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계 신청 전에 먼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 둘째 연계 요청 시, 수집 대상 URL을 반드시 게시판 단위로 분리해서 요청해 주셔야 하며, 공공누리 유형 마크가 있는 게시판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기관의 대표주소 URL로 주시면 일일이 게시판 단위로 확인해야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셋째 연계 인정을 받으려는 온라인 저작물에 부착된 마크 이미지명은 유형별로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참고 : <http://www.kog1.or.kr/news/noticeView.do?dataIdx=64>
(한국문화정보원 제공 공공누리 유형마크 부착방법 안내)

55

공공누리 수집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 이런 경우는 홈페이지 내용을 보여주는 기술적인 방식이 웹수집기가 읽어 들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대표적인 경우가 사이트 상세페이지 링크가 input 태그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form 방식을 통한 상세 페이지 이동은 수집기가 정상적으로 URL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면 각 기관 담당자 분들이 판단하여 보안상 문제가 없는 게시판을 아래와 같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 또 다른 경우는, 사이트 상세페이지가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수집기가 스크립트 페이지를 인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예를 들면 linkView(page, viewId) 일 경우 해당 상세페이지에 스크립트에서 가져 오는 page, viewId 값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onclick, data 태그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수집기에서 URL 인식을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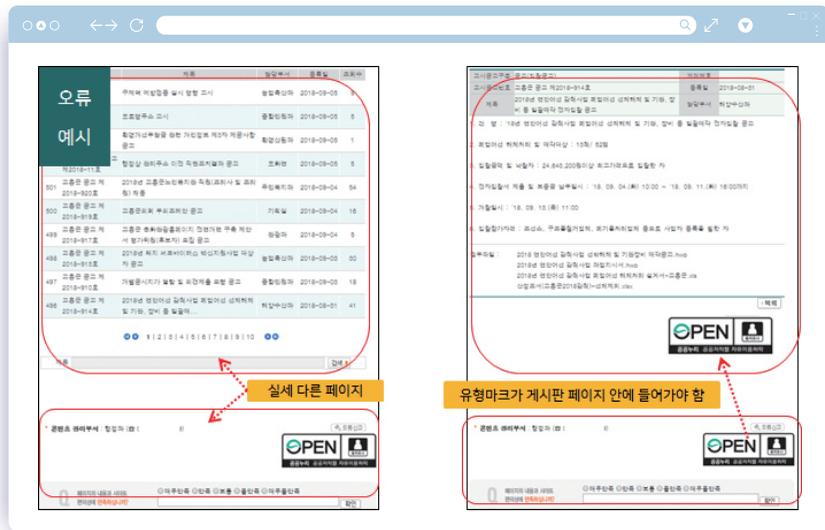
- 위 이미지와 같이 a태그에 상세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수집이 가능합니다.

- 위 이미지와 같이 a태그에 상세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수집이 가능합니다.

II. 공공저작물의 제공

6. 공공저작권의 신탁

- 마지막으로, 공공누리 마크를 i-frame 밖에 부착하거나 외부 URL인 경우입니다.
 - 공공누리 마크를 i-frame 밖에 붙여 실제 게시판을 수집하면 공공누리 마크가 없습니다.
 - 해당 기관이 아닌 타 사이트를 i-frame을 통해 불러오면 수집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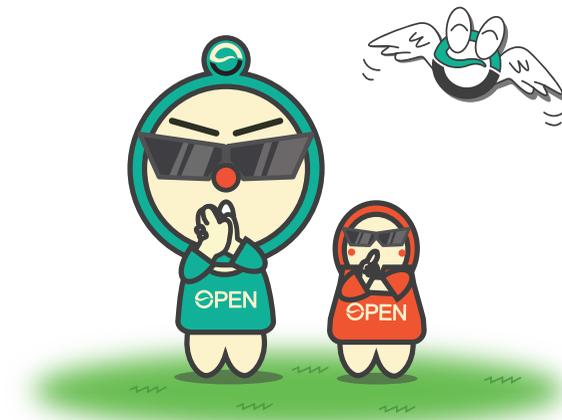
- 이런 경우에는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정보화를 담당하는 부서에게 요청하여 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업체의 기술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6

56

저작권 위원회에 어문저작물로 등록한 후 신탁을 맡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저희 한국문화정보원은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 신탁저작물을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시스템 'ALRIGHT' 참조).
- 공공저작물 신탁관리를 맡기시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소재파악이 용이하고, 사용료 징수 등 저작권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인력 및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대한 침해에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IV

저작물 이용

-
1. 저작물 이용 가부
 2. 저작물 이용 범위

IV. 저작물 이용

1. 저작물 이용 가부

기관에서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영상 저작물을
민영방송사에서 사용신청 하였을 경우,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공영방송도 상업광고가 포함되거나 시청료를 받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고, 시청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방송 주체가 상법상 회사라면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영리목적의 방송에 해당합니다.
- 공공누리는 일반 이용자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표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공누리 이용조건과 다른 내용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저작물을 공표하고 관리하는 기관에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지 않을 경우(위탁 제작 후 저작권 양도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저작권자와 협의 후 이용허락을 해야 할 것입니다.

58

해외 공공저작물을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에 허락 없이 사용가능할까요?

- 해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개방되어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국가마다 개방의 정도 및 이용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공공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이용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입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공공누리와 마찬가지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표시로서, 일본은 독자 라이선스 개발하였고(자유이용마크제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CCL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포괄적인 이용약관 형식의 OGL을 개발하였습니다.
- 이처럼 자유이용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범위를 확인하여 이용하시면 되고, 해외 공공저작물 활용시에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59

책의 표지, 영화포스터 등의 이미지를 도서정보 제공이나 영화상영회 개최 등을 위해 인쇄물이나 인터넷 정보제공 시 활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이용가능하다면 사용 이미지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지요?

- 책의 표지 및 영화 포스터의 경우, 이미지, 어문저작물 등 저작권뿐만 아니라 초상권, 상표권 등 다양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권리자의 이용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로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저작권법 제23조부터 38조 참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나 보다 안전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 범위의 확인 및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권고 드립니다.
- 그리고 이용 가능한 경우 법적으로 사용 이미지 크기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으므로, 이용 크기 및 이용 조건에 관하여도 저작권자와 상의 및 이용 허락을 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60

IV. 저작물 이용

2. 저작물 이용 범위

기관에서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자료를 기관에서 강의용 교재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나요?

-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²¹⁾**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일부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리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가 아니라면, **저작권법 제28조²²⁾**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용이 인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21)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22)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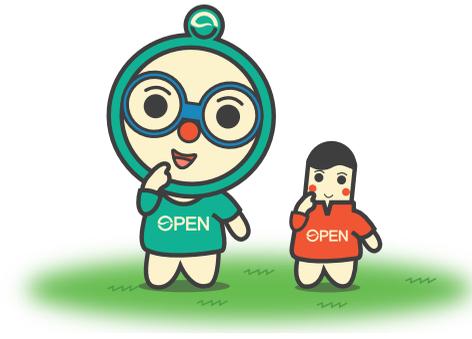
부처에서 발간한 책의 일부를 번역하여
우리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관련 문제가 없나요?

- 부처의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자유 이용대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또한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공공누리 제3유형 또는 제4유형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다만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에는 공공누리가 부착되어 있을 것이므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저작권 또는 이용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책자의 저작권이 부처에 전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62

학교의 시험문제²³⁾를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시험문제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이기 때문에
회사의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는 것이 맞나요?

- 국·공립학교의 기출문제의 경우 시험 출제자 등이 외부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표시를 하여야 하고,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사립학교의 기출문제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63

지자체나 도서관에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은 아닌가요?

- 발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의 경우, 지자체나 도서관 등에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일반 공중에게 상영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²⁴⁾. 다만 시행령에서 무료 상영이 불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외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후 저작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판례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 [1] 고등학교 교사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제한 시험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문학작품 등의 인문·사회학적 지식과 이해의 정도, 자연 과학적인 원리나 컴퓨터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으로서, 비록 시험문제 중 일부가 교과서, 참고서, 타 학교 기출시험문제 등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되었고, 시험문제가 현행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중략)
- [3]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당해 고등학교의 기획 하에 소속 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한 것이고, 문제지에 학교 명칭만이 기재되고 출제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다수인인 위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당해 고등학교의 명의로 공표된 단체명의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위 학교의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한 사례.
- [4]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시험지 중 일부에 해당 시험을 특징하는 시험지 표제문구로 당해 학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출제자가 임의로 해당 시험을 특징하기 위하여 표시한 것으로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험문제를 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 저작물로 볼 수 없고, 그 저작권은 출제자로 시험지에 기명된 교사들에게 귀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저작권법]

24)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4

기증받아 설치한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유지 보수를 위해
수선하는 것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 기증받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저작자에게 여전히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므로, 조형물의 수선, 위치변경 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 옥외에 설치된 조형물은 정기적인 수선을 요하기 때문에 이용의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수선은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²⁵⁾ 그러나 수선으로 인해 원작자의 작품 의도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부득이한 범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원작자의 작품 의도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안에 따라 위치 변경 전에 원작자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는 기증을 받으면서 수선, 위치 변경 등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아놓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65

미술저작물의 소장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관행사에
작품을 전시해도 될까요?

- 미술저작물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저작물 원본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1항)²⁶⁾. 따라서 원본을 전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참고로 이 경우 전시 기간, 전시 장소, 전시 범위 등에 관하여도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
조
법
령

[저작권법]

25) 제13조(동일성유지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참
조
법
령

[저작권법]

26)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6

기관 홍보를 위해 유명 작가의 문구를 이용해도 될까요?

- ❑ 문구의 이용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문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로 조합된 단문이라면 창작성있는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경우 저작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문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영화 '왕의 남자'대사'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문구에 대해 법원은 저작물성을 부정한 바 있고(서울고등법원 2006라503결정), 가요 '내가 제일 잘 나가'의 문구를 이용해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으로 광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996결정).
- ❑ 그러나 짧은 글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²⁷⁾, 이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조 판례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2고정4449판결

피해자의 트윗글은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작가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도 충분하므로 저작물에 해당한다.





기타

1. 개인정보 관련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3. 저작권 공유자의 폐업
4. 공공데이터 관련
5. 초상권 관련
6. 공모전 관련

67

V. 기타

1.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엑셀로 보관중인데 모 대학의 교수님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키워드 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제공해도 되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²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동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제공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정보주체가 모 대학의 교수님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제3자(모 대학 교수)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28)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8

V. 기타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발간물에 대하여 서체 침해 관련하여 상대방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해야하죠?

- 우선 발간물의 제작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디자인업체 또는 출판사 등 외부에 용역을 준 경우, 도급 계약의 법리상 수급 업체(디자인업체 또는 출판사 등)에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컨설팅 중 수급 업체에서 보유한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발간물에는 수급 업체가 아닌 기관명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관이 내용증명을 받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다만 내부 직원이 서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는 등 불법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기관이 책임을 져야합니다(참고로 이 경우 저작권법상의 양벌규정²⁹⁾에 의해서 기관도 벌금형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역이나 도급의 경우, 확인 및 보증 규정이나 면책 규정을 계약서에 삽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원들에게 불법 소프트웨어나 서체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29)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

용역산출물을 인쇄하였는데,
인쇄업체 측에서 서체에 대한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 기관이 서체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작업을 지시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도급계약 법리상 인쇄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관이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실 때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계약서 등에 확인 및 보증규정과 함께 면책규정을 삽입해 두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70

법무법인으로부터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결과물의 제작 주체가 누구인지, 어떠한 경위로 만들게 되었는지를 살펴서 대응하여야 합니다.
- 만약 용역 산출물인 경우 기관에서 저작권 위반 등의 사실을 알고서 작업을 지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 내부 직원이 작성한 산출물인 경우 직원뿐만 아니라 기관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³⁰⁾
- 그리고 후자의 경우(**기관 내부 직원이 불법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액에 관한 산출 근거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산출 근거 및 액수가 적정한 경우 합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상대방의 손해배상액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합의가 곤란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입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30)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등이 폐업 등에 따라 없어진다면, 제3자에게 기술이전 등이 불가능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청산 절차를 완료하여야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저작 인격권과는 달리 저작재산권은 상속 및 양도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폐업하였다고 해서 법인의 권리·의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법인 청산 절차 완료 전 저작재산권 양도를 받는다면 제3자에게 기술이전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 다만 실무상 대표자나 실무자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청산을 완료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식회사 등 법인과 계약을 할 경우, 미리 폐업 이나 청산 절차 전 사전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할 경우 저작재산권의 귀속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서 등에 기재해 두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V. 기타

3. 저작권 공유자의 폐업

03

73-1

저희 기관의 연구보고서는 상당 기간의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물로서 통상 통계의 자산(경제적 유용성)으로 간주되고, 지침서를 작성한 기관 및 조사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외부제공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민원인 요구 시 개방해야 하나요? 위의 경제적 유용성이 제공거부 사유가 되나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본문³³⁾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³⁴⁾는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제적 유용성은 제공거부사유가 아닙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3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본문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4)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

V. 기타

4. 공공데이터 관련

04

73-2

경제적 유용성의 사유가 불충분하여 제공거부가 불가하다면
다른 합당한 제공거부 방법은 존재하나요?

- ▣ 예외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³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 거부가 가능합니다.
- ▣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와 불가능한 데이터가 기술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분리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³⁶⁾.

참조
법령

[저작권법]

3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3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V. 기타

5. 초상권 관련



74

초상권의 검토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요?

(관련 사례 : 방송 및 언론 보도에는 초상권 동의 없이 행인의 모습이 본인 식별가능하게 보도되는데 공공저작물에서는 그와 같이 허용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 초상권이라 함은 자신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등을 말하는 바,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초상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초상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초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기타 게시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참고로 초상권 관련 권리처리 방법으로서, 기관의 대표자나 직원과 같은 기관 내부의 사람, 상부기관 참석자, 세미나·토론회 등에서 발제자 및 강연자, 수상자와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나 행사에 참여하여 사진이 찍힐 때 이용 가능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은 각 당사자가 초상권 이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고 공공누리 제1유형 및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권리 처리를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세미나·토론회의 단순 참석자와 기관에 속하지 않은 제3자 등의 경우 묵시적인 초상권 이용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에선 무리가 있으므로, 초상권 이용 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사진을 모자이크하거나 삭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 부착 및 자유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권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또한 공공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초상 이용에 관한 면책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방송 및 언론 보도에서 초상권 동의 없이 행인의 모습이 본인 식별가능하게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이용 범위에 한정되며, 만약 본인 의사에 반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대부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해서 권리 구제를 받고 있고, 실무상 대부분 수인한도이론에 의하여 본인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략적인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75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책의 PDF파일에 제공요청이 들어왔어요. 초상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초상권은 헌법상의 인격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초상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초상 사진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따라서 초상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제공하시는 방안과, 초상 본인의 동의를 받기 힘든 경우 문제되는 초상 사진의 삭제나 모자이크 처리를 조건으로 제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V. 기타

6. 공모전 관련



76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데 저작물에 대해서 이용 등 동의서, 계약서를 받지 않았었어요. 이런 경우에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제공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할 수 있나요?

- 공모전 수상작에 대해서는 제안서, 계약서 등에 별다른 명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상자에게 저작권이 귀속합니다.
따라서 수상자의 이용 동의나 저작재산권 양도가 없는 이상, 기관은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이 없으므로 제공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공모전의 경우 수상작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 전부를 귀속할 수 있으며(이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등에 수상작이 아닌 공모전에 출품작 전부의 저작권을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 등은 지나치게 부당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77

기관에서 주최한 정책 제안 공모전 결과물을 이용할 때에도 저작권 양도를 받아야 하나요?

- 저작권법은 정책 제안과 같은 단순한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으므로³⁷⁾, 제안된 정책 자체를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제안서에 표현된 어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서술된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양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판례

37)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00.10.24.선고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09.5.28.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반영하여야 한다.

78

저희 기관은 매년 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하고 수상작을 엮은 책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수상작품집에 공공누리를 적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은 단순히 기관이 저작물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외부의 제3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수상작에 대해 저작권 양도를 받았다면 공공누리 부착이 가능하며, 저작권 양도가 아닌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공모전을 주최한 기관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서 등에 수상작이 아닌 공모전 출품작 전부의 저작권을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은 지나치게 부당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 참조

79

기관에서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사진을 이용 중인데 피촬영자인 유명 운동선수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계속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 초상권자의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사진을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기관이 비록 직접적인 촬영자가 아니어도 침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³⁸⁾ 따라서 계속적으로 사진을 이용하기 원한다면 초상권자와 권리 이용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모전 개최 시, 응모자에게 초상 이용 허락 등 필요한 이용 허락을 미리 받을 것과 이에 대한 확인 및 보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로 초상인이 유명 운동선수라면 초상 사진의 독립적·영리적 이용 시 재산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선수 협회 등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문의 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 판례

38) 인천지방법원 2016.4.6. 선고 2015가단232254 판결

• 사건개요

甲이 乙의 정면 모습(한복 의상의 장○춤 무용예술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丙 공사의 배포 등의 과정에서 甲과 丙공사는 피촬영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丁공사가 丙공사 운영의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위 사진을 내려받아 약 8년 동안 국제공항 청사 출국장 게이트 벽면 등에 전시한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丙공사는 乙의 동의를 결여된 사진 배포와 공공장소 전시로 인한 피해 등 초상권 침해로 乙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VI

부록

1. 계약서 및 동의서 양식
2. 웹툰으로 알아보는
공공누리 제도

① 저작권재산권 양도 계약서

※ 본 양식은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 내 [자료실/강의실] 게시판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 부록

1. 계약서 및 동의서 양식

- ① 저작권재산권 양도 계약서
- ② 자유이용 허락 동의서
- ③ 초상 이용 동의서

저작물 저작권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권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권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기관명)은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사업명) 수행자로부터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권재산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기관명)와 △△(용역수행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업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권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 기관명 :
- 주소 :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 기관(개인)명 : (인)
- 소속 :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참여 인력

번호	이름 (한자)	소속	주소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요약사항

-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기관명)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사업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기관명)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관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기관명)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사업명)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격권) '양도자'는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기관명)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자유이용 허락 동의서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기관명)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0. .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 기관(개인)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명의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____년 ____월 ____일
 저작자 : (인)
 활용기관 : (인)

③ 초상 이용 동의서

초 상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기관명)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_____ 귀중

VI. 부록

2. 웹툰으로 알아보는 공공누리 제도

- 1화.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제도
- 2화. 공공누리 4가지 유형
- 3화. 출처표시
- 4화. 신탁저작물
- 5화. FAQ : 상업적 이용과 변경 금지 사례

내 공모전을 부탁해!

글/그림 김유



1화.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제도



난 ○○대학교
영상학과
4학년 여누리!

이번에 졸업작품 겸
공모전에 낼 영상을
만들기 위해
기획서까지
짜 뽑아줬는데...

여누리
졸업반, 주인공



정작 필요한
영상소스들은 없거나
그나마도 저품질이라
엉망 그 자체!

와...
내 시력이 강제로
0.1로 떨어지네.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4가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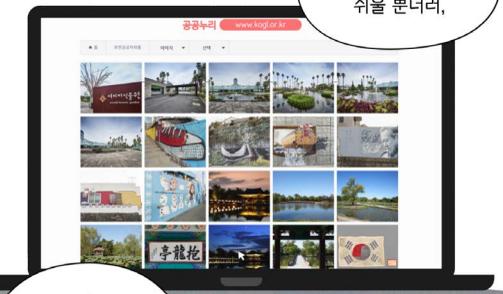
우선
4가지 유형별로
사용조건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한 공공저작물엔
반드시 출처표시를
명시해야 하지요.



출처표시

이런 공공저작물들은
'공공누리'에 접속하면
한 번에 찾기도
쉬울 뿐더러,



이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나 제품,
유용한 어플까지
만들 수 있으니
참으로 좋은
시스템이지 않나요.

신탁저작물

이 밖에도,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신탁관리시스템'을 통해
서울시나 문화재청 등의
기관에서 위탁 받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LRIGHT



서울특별시 신탁저작물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장군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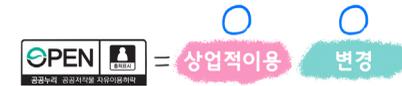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만나보세요!

www.kogl.or.kr

- ▶ 본 홍보웹툰에는 안심글꼴 (순바탕체, 부산체, 고양시 전용서체, 한글누리체, 경기천년체)을 적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 본 홍보웹툰은 공공저작물로 개방됩니다.

2화. 공공누리 4가지 유형





※ 변경 (2차적 저작물 작성)

1유형은 출처만 기재한다면,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이 모두 가능해요.



2유형은 상업적으로 쓸 수 없다는 표시예요.

하지만, 변경은 가능하니, 비상업적인 범주 내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3유형은 변경 금지예요.

2유형과는 반대로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구요.



상업적이용 × 변경 ×

4유형은 변경 없이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한 유형이죠.



아하... 근데 그런 공공누리 유형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국가 및 지자체 등 해당 기관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을 땐 1유형을 부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 (개인의 사생활, 사업상 비밀, 국유재산 등)에 해당될 경우, 공공누리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기관 외에 다른 저작권자가 있을 경우,



그 저작권자의 동의 범위에 따라 1유형부터 4유형 사이에서 정하게 됩니다.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만나보세요!

www.kogl.or.kr

- ▶ 본 홍보웹툰에는 안심글꼴 (순바탕체, 부산체, 고양시 전용서체, 한글누리체, 경기천년체)을 적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 본 홍보웹툰은 공공저작물로 개방됩니다.



3화. 출처표시



*출처표시 의무
저작권법 제37조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저작권자(=제공자)를 표시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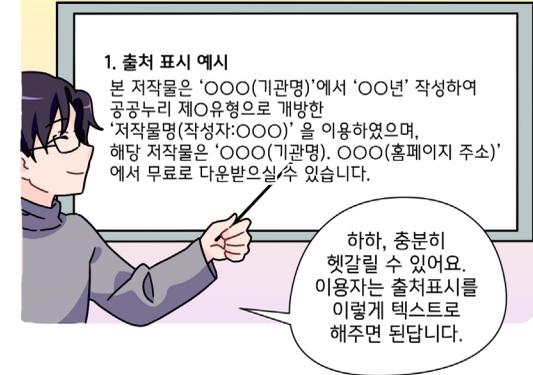
다음날



출처표시 ≠ 공공누리 유형마크



공공누리사이트 '공공누리 유형안내' 참조





출처표시는 반드시 어디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작물 특성에 따라 권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옥에 관한 논문(출처:문화재청).hwp	문서 - 문서 마지막 페이지 - 파일명
상세설명서 (자료이미지출처:문화재청)	상품 - 상세 설명서
우리 한옥 알아보기	출판물 - 출판물 표지(우측상단) - 출판물 내지
엔딩크레딧 (자료출처:문화재청)	영상 - 엔딩크레딧
문화유산	사진 - 사진 하단
국악(출처:문화재청).mp3	음원 - 디지털파일 또는 파일명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미디어출처:문화재청)	광고물/포스터/현수막/간판 등 - 제작물의 모서리

혹시나 인터넷에 저작물이 업로드 될 경우엔 그 사이트에도 동일하게 출처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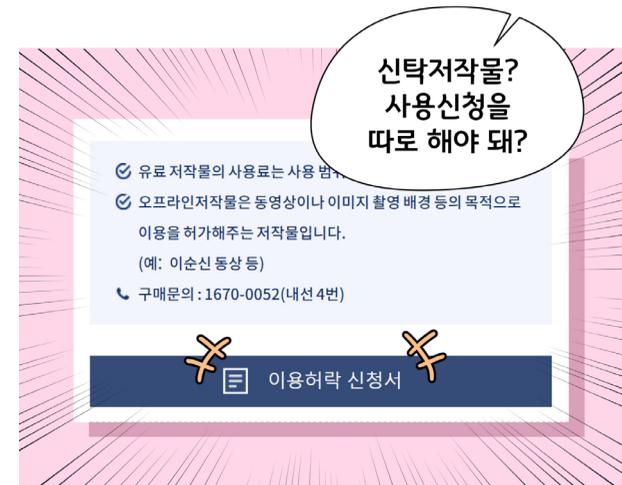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만나보세요!

www.koglor.or.kr

- ▶ 본 홍보웹툰에는 안심글꼴 (순비탕체, 부산체, 고양시 전용서체, 한글누리체, 경기천년체)을 적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 본 홍보웹툰은 공공저작물로 개방됩니다.

4화. 신탁저작물





오호~
그거 내 전문분야데.
내가 이래봐도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변호사잖아.

척!

UPDATE
문정원
남준의 선배이자
마루의 삼촌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변호사

**삼촌이 그 쪽
전문가였어요?**

그럼~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신탁관리시스템을
'ALRIGHT'라고 불러.

KCISA 한국문화정보원

신탁저작물 = ALRIGHT

우선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하는 법률관계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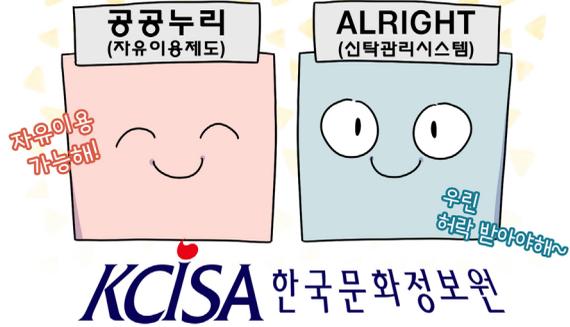
마찬가지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중 일부를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기관을
대신해 저작물을 관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산권을
이전해 관리하는 저작물을
신탁저작물이라고해.

음...그럼,
공공누리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이랑
ALRIGHT에서 제공
되는 신탁저작물의
차이점은 뭐예요?

둘 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건
똑같지 않아요?

공공누리?
ALRIGHT?

맞는 말이야!
하지만 공공누리는
저작물의 유형별로
기준에 따라 '자유이용'
가능하게 제공
해둔 반면,



ALRIGHT이 제공하는
신탁저작물은,

1)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 3자가
공공누리 자유이용이나
무료개방에 동의하지 않거나,

2) 국가안전보장, 업무상 비밀
또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서
자유이용개방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신탁받아, 이용허락 및 이용료
징수를 위탁 처리해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 신탁저작물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에 한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신탁관리시스템
(ALRIGHT)을 통해
번거로운 저작물 관리를
맡길 수 있어 편리할 뿐더러,

사용신청 내역으로
이용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니
불법이용에 대해 차단할 수
있게 되고 또, 문제가 될 경우
법적 대응까지도 할 수 있어
안전한 저작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우리같은
사용자 입장에서
저렴한 사용료만 지불하면
신탁관리시스템
(ALRIGHT)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여러 개의 저작물을 쉽게
신청할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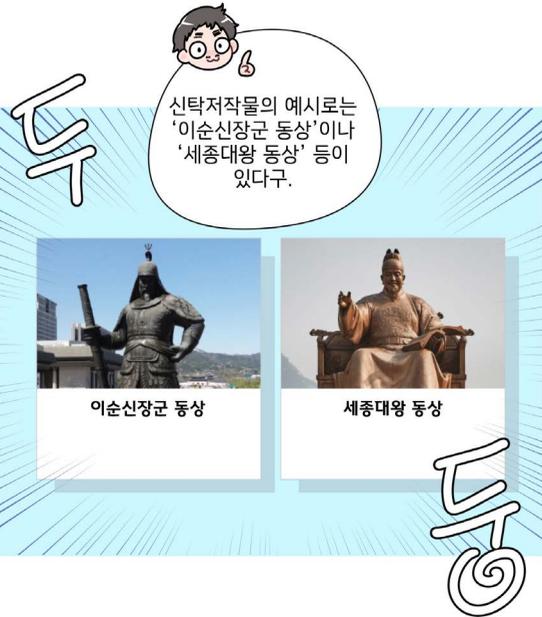
품질까지
보장되니
서로 윈윈이지.



신탁관리시스템

신청방법

한국문화정보원 개방지원센터: 1670-0052
신탁관리시스템(ALRIGHT) 운영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만나보세요!

www.kogl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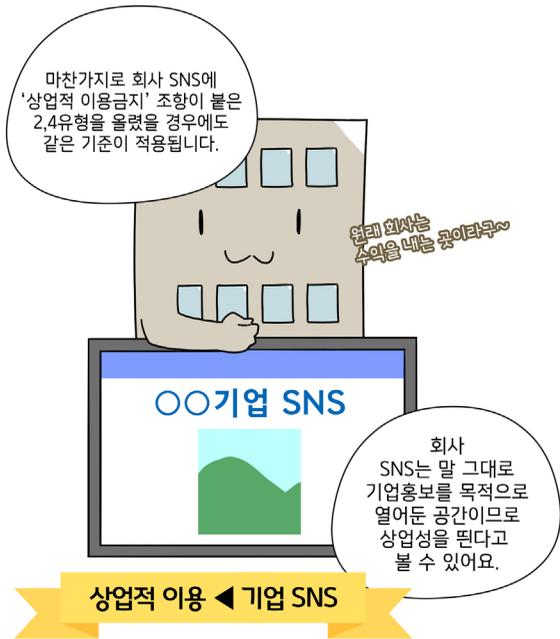
- ▶ 본 홍보웹툰에는 안심글꼴 (순비탕체, 부산체, 고양시 전용서체, 한글누리체, 경기천년체)을 적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 본 홍보웹툰은 공공저작물로 개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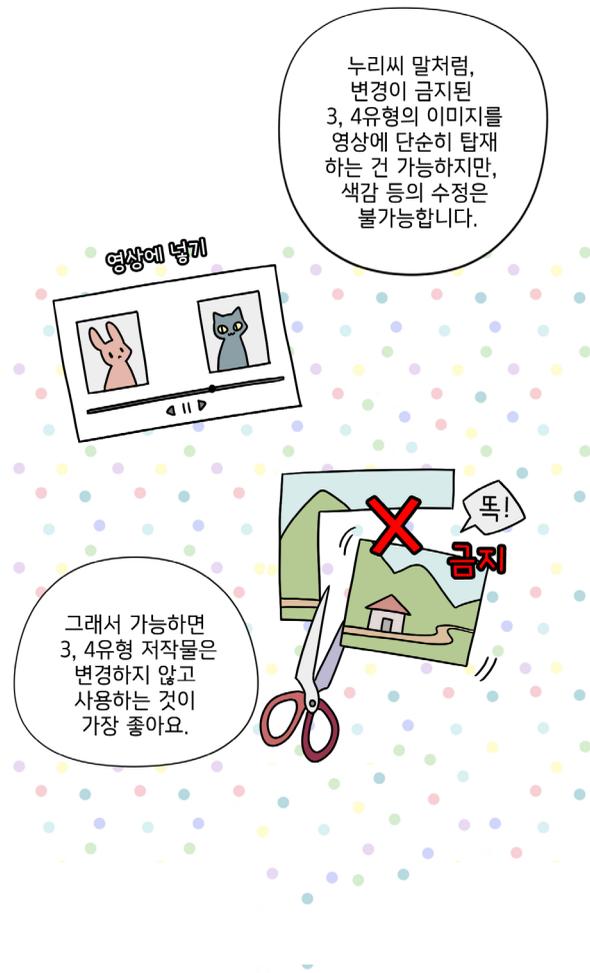


5화. FAQ : 상업적 이용과 변경 금지 사례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만나보세요!

www.kogll.or.kr

- ▶ 본 홍보웹툰에는 안심글꼴 (순바탕체, 부산체, 고양시 전용서체, 한글누리체, 경기전년체)을 적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 본 홍보웹툰은 공공저작물로 개방됩니다.



공공저작물 상담 사례집

2021 12월 14일 인쇄

2021 12월 14일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서울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3/6/8층
Tel : 1670-0052

디자인·인쇄 (주)태그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 센트럴빌딩 404-1
Tel : 02-2271-0103

- 본 사례집은 공공누리 홈페이지(<http://www.kogl.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공공누리 홈페이지 ⇨ 개방지원센터 ⇨ 자료실
 - 본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670-005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안심글꼴 _ KoPub World 돋움체 _ 한국출판인회의 / 안심글꼴 _ 문화돌봄체 _ 문화재청 /
안심글꼴 _ 경기천년제목 _ 경기도 / 안심글꼴 _ 고양덕양체 _ 고양시 /
안심글꼴 _ 제주고딕체 _ 제주특별자치도 / 안심글꼴 _ 푸른전남 _ 전라남도